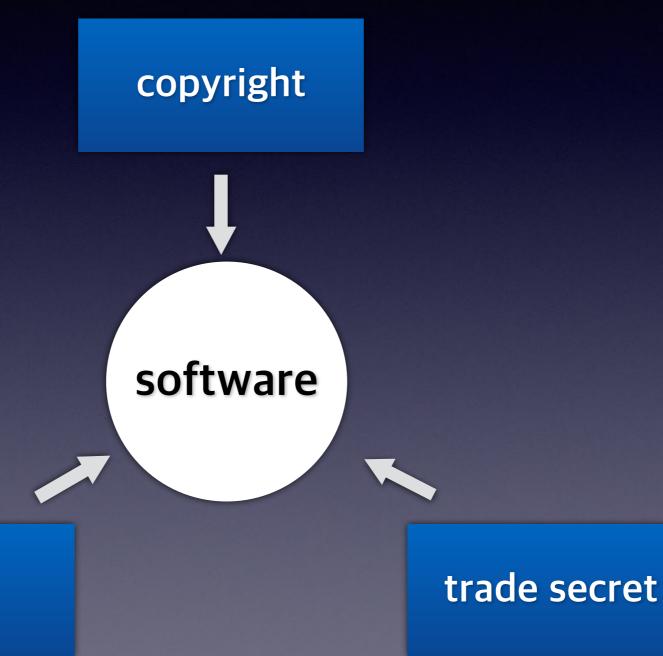
기업간 라이선스 분쟁사례 및 이슈

斷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소프트웨어의 보호

patent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의 비교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대상	표현	아이디어	아이디어
형식적요건	무방식	등록	무방식
존속기간	50년	20년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구
요건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비밀성, 경제성
권리의 내용	이용(exploit)	실시	침해에 대한 금지, 제재

FOSS 관련 분쟁 유형

FOSS 권리 침해

- 라이선스 위반
- ◉ 주로 저작권
- FSF, SFLC
- ◉ 컴플라이언스

FOSS의 타인 권리 침해

- ◉ 저작권 침해
- ◉ 특허권 분쟁 확대
- AT&T vs. BSD
- 구글 vs. 오라클
- SOC vs. 리눅스

FOSS 활용, 기 여와 리스크

- ◉ 저작권 리스크
- ◉ 특허 리스크

gpl-violations.org에 의한 일련의 소송들

gpl-violations.org

GPL로 라이선스 된 Netfilter/Iptable의 개발자 중 한 명인 Herald Welte(독일)에 의하여 조직.

처음에는 위 소프트웨어에 관한 GPL 위반에 대한 쟁송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GPL로 라이선스 된 다른 소프트웨어로 확대 최초의 본격적인 GPL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Fortinet UK case

독일 뮌헨법원은 GPL를 준수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

D-Link case

펌웨어에 MTD, MSDOSFS 등을 GPL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 gpl-violations.org가 저작권 양도 받아 소송 소프트웨어 역분석을 통해 증거 확보

FSF vs. Cisco

FSF에 의한 최초의 소송 (2008년)

사안의 내용

칩셋 공급회사인 Broadcom이 Linksys사에게 제공한 무선라우터 칩셋의 코드가 FSF가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GPL 위반위 코드는 Broadcom인 대만회사를 거쳐 외주를 준 중국 회사가 납품 그 후 Cisco가 Linksys를 인수함에 따라 소송상대방이 됨

2009년 합의로 종료 GPL 컴플라이언스 담당 직원 임명 FSF에 일정 금액 기부

BusyBox case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에 의한 소송

사안의 내용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Erik Anderson과 Rob Landley가 개발한 유닉스 유틸리티 모음인 BusyBox에 관한 일련의 소송들 HDTV, 셋탑박스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휴맥스를 포함한 14개 회사를 상대로 제소

2009년 합의로 종료 GPL 컴플라이언스 담당 직원 임명 소스코드제공 고객들에게 GPL관련 권리 고지 금전적 배상

Jacobsen vs. Katzer

FOSS 라이선스의 효력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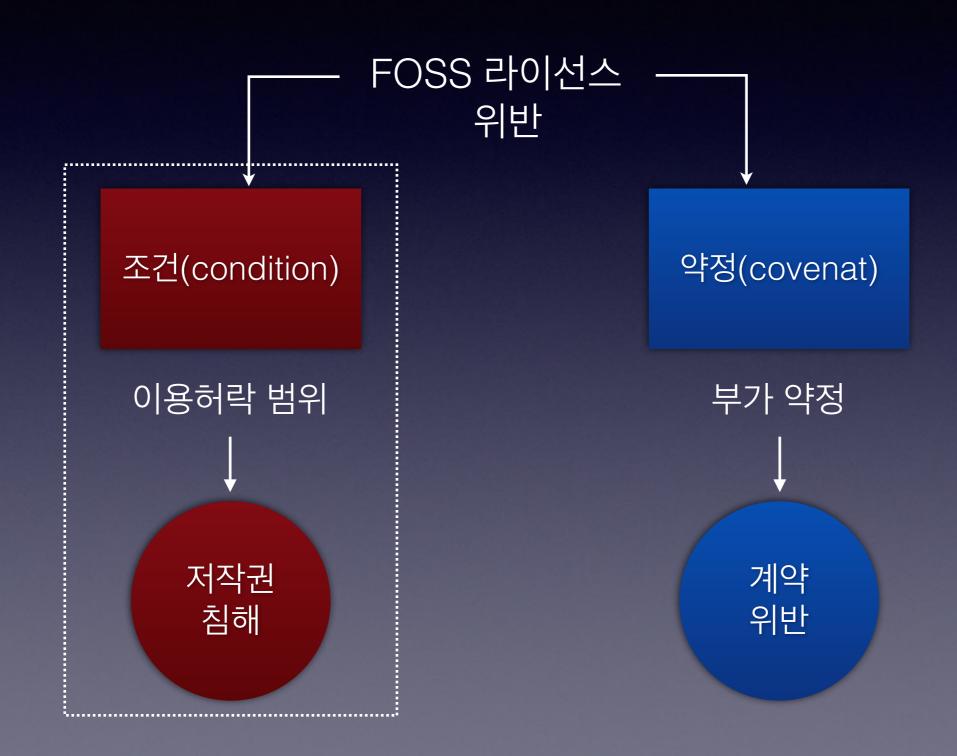
사안의 내용

Robert Jacobsen은 DecoderPro의 저작권자 Artistic License로 이용 허락 Matthew Katzer가 위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저작권 표시를 지우고 복 제, 배포

쟁점

라이선스 조항 위반의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 1심은 부정 2심인 Federal Circuit에서 1심을 뒤집고 저작권 침해 인정

Jacobsen vs. Katzer



Oracle vs. Google

Java[©] API Pack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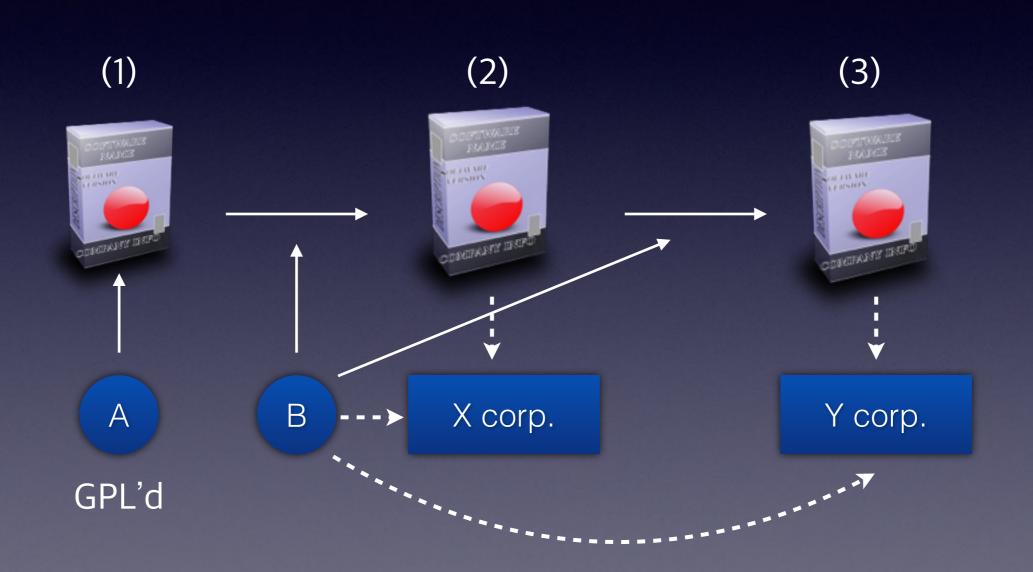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Java ME를 사용하지 않고 Dalvik 가상머신을 설계한 후 자바 API 내의 함수들을 자체적으로 구현 다만 총 168개의 API 패키지 중 37개가 자바 API 패키지의 declaring source code와 구조, 순서, 조직과 동일 - 저작물성이 쟁점 1심에서는 저작물성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인정

rangeCheck 함수

Bloch 박사가 선에 근무할 때 작성, 선 퇴사 후 구글로 이직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OpenJDK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여 위 함수가 포함된 Timsort.java와 ComparableTimsort.java 작성 그 후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위 코드를 포함

rangeCheck 함수는 선의 직원일 때 작성한 것이므로 업무상 저작물로 선이 저작권을 갖게 됨 - 그 후 작성자가 이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엘림넷 케이스



누가 (2), (3)의 저작자인가

개작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창작성이 더해져야 함 (FOSS 라이선스에서 말하는 수정은 더 넓은 의미) 개작자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별개의 저작권 취득, 그러나 원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업무상 저작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작성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이 저작자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인 원칙의 예외) 계약 또는 근무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요건도 필요 없음

X 회사의 B 및 Y 회사에 대한 청구

저작권 침해

2차적 저작물의 업무상 저작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

영업비밀(Trade Secret) 침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FOSS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공개된 소스코드 - 영업비밀 X 비공개 소스코드 - 영업비밀 가능 소스코드 미공개로 인한 GPL위반과는 별개의 문제

(2), (3) 의 권리관계

GPL 위반 GPL에 의한 이용허락 종료 저작권 침해 - 손해배상청구, 침해정지 등 청구, 형사처벌

제3자의 지위 GPL은 라이선스 - licensor와 licensee의 관계 GPL로 이용허락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영업비밀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Versata vs. Ameriprise

사건(A-14-CA-12-SS,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의 개요

Versata는 DCM 프로그램을 Ameriprise에 상용 라이선스

Ameriprise가 커스텀마이징을 위해 DCM을 수정하자 위 라이선스 위반 주장

그러던 중 Ameriprise는 DCM이 XimpleWare의 VTD-XML을 개작한 것을 발견, VTD-XML은 GPL로 라이선스 된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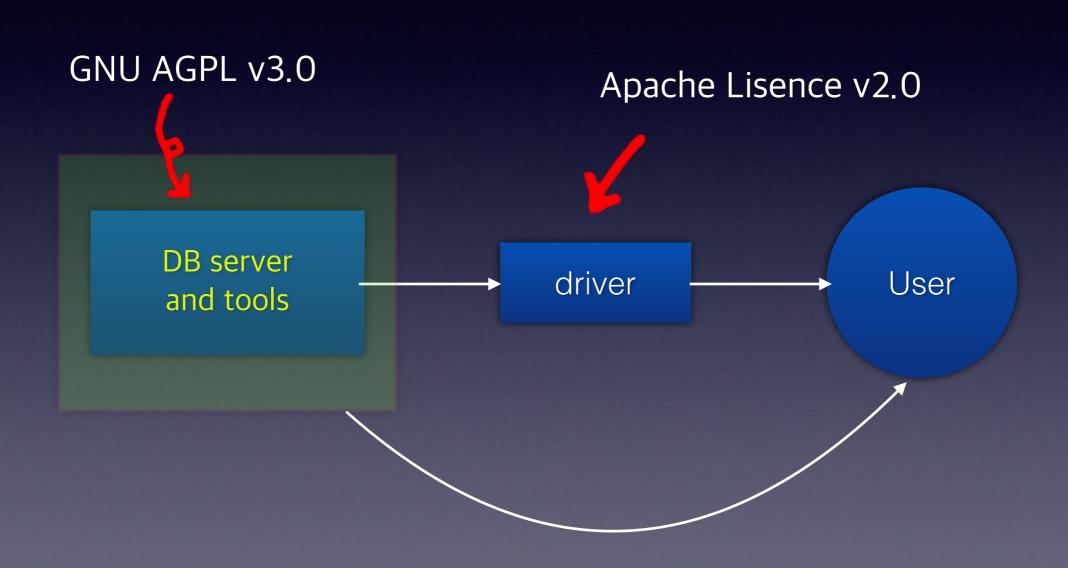
Ameriprise는 DCM이 GPL로 라이선스 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

결론

저작권법은 라이선시가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

제3자는 GPL의 copyleft 조항을 주장할 수 없음

mongoDB 논란



시사점

FOSS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FOSS 라이선스의 각 구체적 내용 이해 어느 부분에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

FOSS 라이선스 위반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모든 구제수단 사용가능이용자가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 필요
제3자가 위반자에게 FOSS 라이선스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FOSS 라이선스 위반과 영업비밀 주장은 별개의 문제

FOSS에 포함된 코드의 검증 필요성 업무상 저작물 주의 개발자가 포함시켰으나 리뷰되지 않은 코드 오픈소스 관련 거버넌스 구축 필요 斷 SHIN&KIM | 법무법인세종

감사합니다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 **T.** 02 316 4040
- **F.** 02 756 6226
- E. jsyoon@shinkim.com



서울시중구퇴계로 100스테이트타워 남산 8층 (우)100-052 I TEL: +82 2 316 4114 I FAX: +82 2 756 6226

www.shinkim.com

본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본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자료 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종 또는 본자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